

## 부록 Ⅲ.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4]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 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단종손해보험상품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